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조사 근거 등 신설〉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69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21.
3. 회 부 일 : 2024. 6.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상의 장애물,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위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행정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실정임.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의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②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4(소방진입환경조사) ① <u>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의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다.</u> ② <u>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 시설개선 등 소방자동차의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③ <u>제1항의 조사 범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¹⁾,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상의 장애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자동차 통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참고자료 참조).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조사를 법률에 명시하고,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 시설개선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화재 발생 이전에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조치를 취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재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²⁾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등 소방활동³⁾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 소방자동차 통행로의 장애요인이 발생한 경우 우회도로 확보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1)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의미함(「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

3)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의미함(「소방기본법」 제16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2.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훈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소방용수·지리조사"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한 관내도로, 지리 및 소방출동로와 소방용수에 대한 조사활동을 말한다.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지리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한다.

1. 정밀조사 : 연 2회(해빙기, 동절기)
2. 정기조사 : 월 1회 이상
3. 수시조사 : 도로공사를 한 경우, 수도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또는 이설을 한 경우, 취약지역 등
4. 조사방법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다.

제13조(소방용수·지리조사 결과조치) ① 소방서장은 소방용수·지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은 즉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방용수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요인 발생한 경우에는 우회도로 확보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조사(안 제21조의4제1항)에 관해서는 법령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적근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짐. 다만, 이를 상위법인 「소방기본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에 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봄.

둘째, 조사결과 소방본부장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에 관하여는(안 제21조의4제2항) 반드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한정할 필요가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이 적극 협력하도록 협력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소방청의 의견이 있음.

그 밖에, 개정안은 소방진입환경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행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임⁴⁾.

4)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소방자동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현황

(‘23.12.31.기준)

구분	진입곤란·불가			
	소계	진입곤란	진입불가	길이(m)
합계	755	623	132	432,451
서울	328	229	99	183,780
부산	112	112	0	40,573
대구	67	67	0	73,649
인천	93	91	2	39,950
광주	4	1	3	1,053
대전	37	36	1	34,449
울산	23	20	3	14,463
세종	6	2	4	1,121
경기	4	3	1	780
경기북부	16	12	4	6409
강원	5	3	2	1,674
충북	2	1	1	2,200
충남	3	2	1	800
전북	4	3	1	1,728
전남	11	11	0	3,200
경북	13	9	4	13,746
경남	8	6	2	4,360
제주	8	8	0	4,733
창원	11	7	4	3,783

※ 자료 : 소방청